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13300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1330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1. 15 선고 97나46513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AA금융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노BA)

【피고,상고인】 류CA(소송대리인 변호사 김B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1. 15. 선고 97나465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제1점에 대하여

금융리스는 실질에 있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이고, 공리스도 리스물건 대금 상당액의 융자를 받아

이에 이자 상당액을 추가한 금액을 리스료라는 이름으로 반환하는 점에서 정상적인 리스와 차이가 없으며, 다만 담보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리스물건의 존재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8135 판결).

같은 전제에서 공리스가 그 자체로 무효라든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시설대여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법률) 제7조의2 제2항,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건으로서 신품이 아닌 특정물건은 그 특정물건의 수입이 부득이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가·승인 또는 추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은 위 규정에 위반한 리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을 뿐더러 동법은 시설대여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리스물건 중 경매절차에서 경매가 된 일부 리스물건의 1997. 5.경 가격은 약 금 77,000,000원이므로 피고의 보증책임은 위 가격의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물적금융의 성격을 띠는 원리스계약에서 정한 손해금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시점 당시의 리스물건가격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이사회결의서 및 정관을 징구하도록 되어 있고(리스업무취급지침 제4조 제2항), 이 사건 리스이용자인 의료법인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정관 제21조에 ○○병원의 이사회는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장기차입 및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이사회결의서(갑제10호증)는 위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은 ○○병원이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리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도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기록 457-458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일응 이유 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은 거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병원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변경계약에 관한 특약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각 분할변경계약시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리스계약의 범위내에서 원고와 리스이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리스물건을 분할하여 이 사건 각 분할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특별히 연대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특약에 따라 체결된 분할변경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최EA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에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보면서도 나아가 원고가 최EA 등의 기망행위에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원리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리스물건 및 리스물건의 공급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리스계약서의 리스물건란 및 매도인란에 각 '추후확정'이라고 기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최EA와 공모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서명, 날인할 당시 리스계약서의 구입금액란 및 취득원가란에는 각 '금 4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분할변경계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약사항도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리스계약이 원고와 최EA 등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고, 그 판시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연대보증이 최EA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임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를 취소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제6점에 대하여

공리스에 있어서 리스물건의 인도가 없는 점에 보증인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금융의 이익을 얻어 이를 리스료로 할부변제하는 것을 보증하는 의사가 보증인에게 있었던 이상 보증인의 위와 같은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고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8135 판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동기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착오에 의한 취소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7. 제7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8. 제8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리스계약의 보증인인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리스물건과 관련하여 소외 박EB와 사이에 금 7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재판상 화해를 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채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박EB와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재판상 화해를 하였으나 판시 경매물건에는 이 사건 리스물건 외에 다른 집기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재판상 화해금액이 전부 이 사건 리스물건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위 화해금액을 실제 지급받았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변제하여야 할 이 사건 보증채무금에서 위 재판상 화해금액을 곧바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리스계약서 제10조 제4항은 원고가 반환받은 리스물건을 처분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는 위 물건대금에서 처분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리스계약과 관련된 손해액에 충당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박EB는 1997. 4. 1. ○○병원에 대한 채무명의를 기하여 이 사건 리스물건의 일부를 포함한 ○○병원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5. 27. 경락이 되었으나 원고가 박EB의 배당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바람에 배당절차가 개시된 사실, 원고는 1997. 6.경 박EB가 ○○병원에 있던 리스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고도 경매신청을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박EB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7가합43418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재판 중이던 1998. 2. 9. 원고와 박EB는 원고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7카합2041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의 가압류를 해제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한다(다만 원고가 가압류를 해제한 후 박EB의 이행 즉, 공탁금의

수령과 원고에 대한 변제는 박EB의 소송대리인이 대리하여 수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화해금액은 이 사건 리스물건 전부에 대한 대가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이 사건 리스물건 중의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기록상 원고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병원에 리스물건을 제공하였음을 엿볼 자료는 없다), 원고는 자신이 협조하기만 하면 박EB로부터 화해금액을 변제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원심변론종결일인 1998. 10. 23. 무렵에는 원고가 박EB로부터 위 화해금액을 변제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필요한 심리도 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원고가 위 화해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화해금액을 이 사건 보증채무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9. 제9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송금액인 금 430,416,00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인 ○○병원의 의료보험연합회에 대한 의료보험진료비 청구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가압류를 하였고 위 의료보험연합회는 법원에 금 127,413,570원을 공탁하였는데 원고는 채무명의인 이 사건 1심 판결의 가집행에 기하여 1997. 11. 17. 금 50,838,528원(50,083,528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배당받았으므로 위 금액은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채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피고의 주장을 정리한 다음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1심판결문의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은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병원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위 배당금을 받아갔다고 주장하였을 뿐(기록 645면) 이 사건 1심 판결의 가집행에 기하여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으므로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오인하여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병원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1997. 11. 17. 위 금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원고도 이 점을 자인하고 있다. 기록 720면), 원고가 배당받은 금 50,083,528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장을 오인하여 공제주장을 배척하고만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이유 있다.

10.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